

I. 국가개황

1. 일반개황

- 국 명 : 투르크메니스탄(Turkmenistan)
- 위 치 : 중앙아시아, 카스피해 연안
- 면 적 : 488.1천 km(한반도의 2.2배, 국토의 80% 카라쿰 사막지대)
- 수 도 : Ashgabat(83만명)
- 인 구 : 5.2백만(2007년)
- 민족구성 : 투르크멘인(85%), 우즈베크인(5%), 러시아인(4%)
- 언 어 : 투르크멘어(공용어), 러시아어, 우즈베크어
- 종 교 : 이슬람교(89%, 수니파), 동방정교(9%)
- 기 후 : 대륙성 사막
- 정부형태 : 대통령 중심제
- 독립일 : 1991. 10. 27 (구소연방)
- 국가원수 : 대통령(Gurbanguly Berdymukhamedov)
- 의 회 : 단원제(Mejlis, 125명, 임기 5년)
- 행정구역 : 5개주 1개 특별시
- 주요정당 : 투르크메니스탄민주당(舊공산당) 일당 체제
- 국제기구 가입 : UN, IMF, IBRD, ADB, EBRD, ICAO, ILO 등

2. 투르크메니스탄 역사

- ~B.C. 4세기 : 스텝지역 원주민인 이란계통의 파르티아(Parthia)족 거주
- B.C. 4세기 : 알렉산더대왕 점령
- B.C. 3세기 : 파르티아왕국(중국명 안신국) 건설
- A.D. 224년 : 파르티아왕국 멸망, 페르시아 사산왕조 지배
- 3~17세기 : 투르크족 지배 및 이슬람화
 - * 5세기 이후 투르크족 이주, 투르크계 부족 거주지화
 - * 13~14세기 일시적으로 몽고족(일한국, 티무르제국) 지배
- 18~20세기 초 : 제정 러시아 지배
- 1924년 : '투르크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수립
- 1925년 : 소비에트 연방 가입
- 1990년 : 주권 선언, 니야조프(Niyazov) 대통령 당선
- 1991. 10 : 소비에트 연방에서 독립
- 2006. 12 : 니야조프(Niyazov) 종신 대통령 사망
- 2007. 2 : 현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 취임

3. 경제개황(2008년 추정)

- 국민총생산 : 81억 달러
- 경제성장률 : 3.0%
- 물가상승률 : 13.0%
- 무역 규모
 - 수출 116억 달러(주요 수출품 : 석유, 가스, 면직물 등)
 - 수입 45억 달러(주요 수입품 : 기계류, 음식료품 등)
- 외국인직접투자 : 8.0억 달러(2007년, UNCTAD 발표)
- 외환보유액 : 55억 달러

4.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 1992. 2. 7.(북한과의 수교 : 1992. 1. 10)
- 주요협정 : 외교관여권 사증면제 협정(2008.12), 항공 협정(2009. 1),
정부간 공동협력위 설립 협정(2008.11)
- 교역규모(2008년) : 22.5백만 달러(수출 22.3백만, 수입 0.2백만)
 - 주요 수출품 : 엘리베이트, 합성수지, 화물자동차, 철강관, 타이어 등
 - 주요 수입품 : 의류, 섬유제품, 플라스틱제품 등
- 해외직접투자(2008년말 현재) : 총투자 3건, 18천 달러

II. 경제·정치 동향

1. 경제동향

(1) 국내경제

〈표 II-1〉 주요 국내경제지표

단위: %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경 제 성 장 률	9.0	6.0	6.0	6.0	3.0
재 정 수 지 / G D P	-2.1	0.9	0.6	3.9	3.2
소 비 자 물 가 상 승 률	5.9	10.7	8.2	6.3	13.0

자료: EIU 추정, Country Report 2009, 1.

□ 대외경제여건 악화로 성장 둔화 전망

- 2007년까지는 고유가 지속에 따른 에너지부문 수출 확대에 힘입어 높은 성장세를 유지해 왔으나, 2008년에는 하반기 이후의 세계경기 침체로 인해 성장률이 3%에 그친 것으로 추정됨.
- 2009년에도 세계경기 침체로 인한 에너지 수요 감소, 에너지부문에 대한 투자 지연, 주요 경제협력 파트너인 러시아의 경기 침체 등 대외여건의 악화로 인해 성장이 더욱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다소 낮아질 전망

-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공공부문 임금 인상, 수입물가 상승 등으로 인한 물가상승압력을 생필품 가격상한제 실시 및 공공요금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억제해 오고 있음.
- 그러나, 2008년에는 국제에너지가 상승, 대중교통요금 인상, 수입식료품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3%로 크게 상승하였음.
- 2009년 이후에는 국제상품가 하락에 따른 수입가격 하락, 정부의 공공부문 임금 인상 억제 등으로 인해 물가상승압력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됨.

□ 재정수지는 적자로 전환될 전망

- 투르크메니스탄의 재정수지는 정부 예산편성 및 집행의 불투명도로 인해 정확한 수치를 산정하기 어려우나 2008년까지는 석유 및 가스 수출 수입(收入)의 증가에 힘입어 재정수지가 흑자를 유지해 온 것으로 추정됨.
- 2009년에는 수출가격 인상으로 가스 수출 수입(收入)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경기침체에 따른 세금징수 감소, 공공부문 급여 및 연기금 인상 등 사회복지부문에 대한 지출 증가 등으로 재정수지는 GDP의 0.1% 수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2) 경제 구조 및 정책

□ 석유·천연가스 등 풍부한 천연자원 보유

- 투르크메니스탄의 2007년 말 기준 천연가스 확인매장량은 2.7조m³(전 세계 매장량의 1.5%)로 러시아에 이어 구소련지역 2위의 천연가스 보유국이며, 원유 확인매장량은 약 6억 배럴(전 세계 매장량의 0.05%)로 추정되고 있음.

□ 에너지부문에 대한 높은 의존도

- 석유 및 천연가스가 총수출 수입(收入)의 90%를 차지하는 등 에너지부문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으며, 1990년대에 전체 수출의 10%에 달했던 면화생산이 점차 둔화되어 최근에는 면화의 수출 비중이 1% 이하로 낮아짐.
- 2007년 2월 출범한 베르디무하메도프 정부는 최근 경제성장의 주요 동력인 가스, 석유 부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농촌개발프로그램” 도입을 통해 쇠퇴해가는 면화생산 등 농업부문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음. 또한, 다양한 수출루트 확보를 위한 신규 가스파이프라인 건설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국가 주도의 통제경제 체제 유지

- 과거 니야조프 정부는 물가통제를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임금 동결, 고정환율제도 유지, 가격상한제 실시 등을 통해 물가 상승을 억제해 왔음. 또한, 정권유지를 위해 각종 보조금 혜택 및 가스·전력 무상 공급 등 반시장적인 정책을 추진하여 왔으며 국영기업의 민영화는 시도조차 하지 않음.

- 현 베르디무하메도프 정부는 외국인투자 유치 등 대외적인 면에서 부분적으로 개방을 확대하고는 있으나, 지난 정권의 정책기조를 대부분 계승하고 있어 국가 주도의 통제 경제체제가 크게 변화될 가능성은 낮음.

□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현 정부의 우호적인 태도로 투자 확대 전망

- 최근 베르디무하메도프 정부는 투자 미비 및 기술 부족으로 생산이 둔화되고 있는 에너지부문 개발 및 투자 확대를 위해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으며, 서방국가들은 자원민족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러시아, 카자흐스탄을 대신할 신규 에너지공급원 확보 차원에서 투르크메니스탄 에너지 부문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
- 석유·가스 분야는 국영기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석유·화학, 면방, 건설, 통신분야 등에서는 지적재산권 및 계약 관계의 불확실성 등의 문제가 있음. 따라서 외국인투자의 확대 여부는 향후 정부가 투자제도 미비, 환율 불안정, 수출루트 확보의 어려움 등 제도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 단일환율체제 도입으로 공식 환율과 실거래 환율의 격차 해소

- 현 정부 집권이후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기반 조성의 일환으로 환율체제를 개편하여 통계 작성시에 적용되는 공식환율(official exchange rate; 5,200 Manat/1US\$)과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비공식환율(commercial exchange rate; 24,000Manat/1US\$ 수준)의 차이를 점차 축소하여 왔음.
- 2008년 1월 1일부터 자국통화의 평가절하를 통해 공식환율을 달러당 6,250 Manat로, 비공식환율은 달러당 20,000 Manat로 조정한 바 있음.

- 2008년 5월에는 공식환율과 비공식환율을 통합하여 1998년 이래 적용되던 복수환율제도를 폐지하고 단일환율제(14,250Manat/US\$1)를 도입하였으며, 2009년 1월 1일부터는 리디노미네이션(redenomination)을 실시하여 기존 5,000 Manat를 1 Manat로 변경하였음.

(3) 대외거래

〈표 II-2〉 주요 국제경제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경 상 수 지	-122	1,231	3,940	3,176	5,417
경상수지 / GDP	-2.1	19.2	53.2	37.2	66.7
상 품 수 지	706	1,997	4,598	4,196	7,123
(수 출)	(3,854)	(4,944)	(7,156)	(7,814)	(11,593)
(수 입)	(3,148)	(2,947)	(2,558)	(3,618)	(4,470)
외 환 보 유 액	2,729	4,458	8,059	13,192	12,123
총 외 채 잔 액	1,522	1,058	881
총외채잔액/GDP	26.4	16.5	11.6
D S R	10.5	6.2	4.3

자료: EIU 추정, Country Report 2009, 1.

□ 천연가스 수출단가 인상으로 경상수지 흑자기조 지속

-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상수지는 2005년 흑자로 전환된 이래 주요 수출품목인 석유·가스의 수출 호조에 힘입어 꾸준히 흑자폭이 확대되어 왔음.

- 2007년 말 러시아와의 천연가스 수출가격 재협상으로 2008년부터 수출단가가 대폭 인상(1,000m³당 100달러 → 상반기 130달러, 하반기 150달러)되었으며, 2009년부터는 수출단가가 유럽시장가격에 연동되므로 당분간 경상수지 흑자기조는 지속될 전망이다.

□ 수출 호조로 외환보유액 급증

- 에너지 수출 호조에 따른 수입 증가로 외환보유액이 2004년 27억 달러에서 2008년 121억 달러로 급증한 것으로 추정되나, 정부의 각종 보조금 혜택 및 가스·전력의 무상제공, Manat화 고정환율 유지를 위한 외환시장 달러 공급 등으로 실제 외환보유액은 추정치 보다 낮을 가능성이 높음.

□ 폐쇄경제체제 유지로 인해 총외채잔액 규모는 크지 않음

- 총 외채잔액은 2004년 15억 달러에서 2006년말 기준 약 9억 달러로 대폭 줄어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투르크메니스탄이 그동안 외국자본의 국내정치에 대한 간섭을 막기 위해 폐쇄경제체제를 유지해 왔으며,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차입도 어려웠던 것에 기인된 것으로 분석됨.

2. 정치·사회 동향

□ 야당 및 반대세력이 없어 정치 안정 가능

- 2007년 2월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전임 부총리이자 보건부 장관이었던 베르디무하메도프가 인민평의회(Khalk Maslakhaty) 및 엘리트 집단의 절대적인 지지와 높은 득표율(89.23%)로 대통령에 당선되었음.

- 베르디무하메도프 신임 대통령은 여당인 투르크메니스탄 민주당(구 공산당)을 주축으로 하는 단일정당체제 유지 및 실질적인 반대세력과 언론에 대한 통제를 지속할 것으로 보여 당분간 정치적 불안은 없을 것으로 보임.

□ 헌법 개정으로 대통령 권한 강화

- 2008년 9월 헌법이 개정되어 인민평의회(Khalk Maslakhaty)가 폐지되었으며, 의회(Mejlis)의 의원 수가 65명에서 125명으로 증가됨으로써 명목상 국민의 대표자 수는 증가되었음.
- 그러나, 동 헌법 개정으로 대통령이 주지사 임명권을 보유하고 국가안보회의(State Security Council)의 의장이 됨으로써 대통령의 권한은 더욱 강화되었음.

□ 사회불안사태 발생 가능성은 낮음

- 전임 니야조프 대통령의 독재정권이 15년동안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항세력이 많지 않고 국민들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현 대통령이 급격한 정치적 변혁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지 않아 사회불안사태가 야기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임.

3. 국제관계

□ 러시아와의 경제협력 관계 지속 전망

- 투르크메니스탄은 천연가스 생산량(연간 674억m³)의 70% 가량을 수출하고 있으며, 이 중 80% 이상을 러시아와 체결한 25년 장기 가스 공급계약에 따라 가즈프롬(Gazprom)의 가스관을 통해 러시아로 수출하고 있음.
- 투르크메니스탄이 최근 가스 수출루트 다양화에 노력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대부분 러시아 가스관을 통해 수출하고 있는 실정이며, 러시아도 중국, EU 등의 투르크메니스탄 진출을 견제함으로써 중앙아시아지역에서의 에너지패권 강화를 도모하고 있어 향후 양국간 협력관계는 지속될 전망이다.

□ 중국과의 경제협력 관계 증진

- 2006년 4월 중국과 투르크메니스탄 간에 가스 장기공급계약이 체결되었으며, 2007년 8월부터는 중국과 투르크메니스탄을 연결하는 신규 가스 파이프라인(Central Asia Gas Pipeline) 건설이 진행되고 있음.

- 2007년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과 2008년 후진타오 주석의 답방을 통해 에너지 부문 이외에 섬유, 은행업, 통신 등 다방면에 걸친 협력을 약속하는 등 최근 양국간 경제협력관계가 증진되고 있음.

□ 러시아, 중국, 서방국가의 에너지 확보 각축장으로 부상할 듯

- 투르크메니스탄은 중앙아시아 유일의 미개척 자원국이며, 지정학적으로도 중요한 위치에 있어 향후 러시아, 중국 및 서방국가의 동국 에너지자원 선점을 위한 경쟁이 보다 치열해 질 것으로 전망됨.

Ⅲ. 에너지자원 현황

1. 매장량 및 수급 현황

(1) 원유

□ 2007년 말 기준 확인매장량은 6억 배럴(세계 전체의 0.05%), 생산량은 일일 20만 배럴(연산 72백만 배럴, 세계 전체의 0.3%)

- 대부분의 원유는 투르크메니스탄 서부의 카스피해 남쪽 연안에 매장되어 있으며, 일부 전문가들은 원유 매장량이 17억 배럴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구소련 붕괴후 원유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해 와 생산량이 독립 직후인 1992년 109천b/d에서 2003년에는 202천b/d로 약 85% 증가하여 최고치를 기록하였음.

□ 외국인 투자기업 철수 등으로 인해 생산량 정체

- 2003년 생산량이 최고치를 기록한 이래 자본 부족, 외국인에 대한 선별적 개발 허용 등으로 인해 2003-2007년 기간 중에는 생산량이 190-200천b/d 수준으로 정체되었음.
- 유망 매장지가 카스피해의 이란, 아제르바이잔과의 경계 분쟁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것도 생산량이 정체되고 있는 원인의 하나로 분석되고 있음.

- 투르크메니스탄의 정치경제 개혁 지체, 폐쇄적 투자환경 등으로 1990년대 진출한 메이저 기업들이 철수, 현재 일부 업체만이 PSA방식을 통해 투자하고 있음.

□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와 시추시설 현대화 등을 통해 생산량을 2020년까지 200만b/d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

(2) 천연가스

□ 2007년 말 기준 확인매장량은 2.7조m³(세계 전체의 1.5%, 세계 13위), 연간 생산량은 674억m³(세계 전체의 2.3%, 세계 10위)

- 카스피해 인근에 매장된 천연가스의 절반이 투르크메니스탄 영토내에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됨.

- 2007년 South Yolotan/Osman 광구에서 대량의 천연가스가 발견됨으로써 투르크메니스탄의 천연가스 추정 매장량은 약 10.5조m³로 증가되었음.

□ 생산량의 약 70%를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란 등지에 수출하고 있으며, 천연가스는 투르크메니스탄의 최대 수출품목

□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2015년까지 천연가스 수출량을 연간 1,250억m³로 증가시킬 계획

〈표 III-1〉 투르크메니스탄 가스·석유 매장량 및 생산량 현황

구 분	단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원유	매장량 (억배럴)	5	5	5	5	5	6	6
	생산량 (천b/d)	162	182	202	193	192	186	198
	소비량 (천b/d)	83	86	95	95	100	103	107
천연 가스	매장량 (조 m ³)	2,67	2,67	2,67	2,67	2,67	2,67	2,67
	생산량 (억 m ³)	479	499	551	544	588	622	674
	소비량 (억 m ³)	129	132	146	155	166	189	219

자료: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June 2008.

2. 주요 유·가스전 개발 현황

(1) 개 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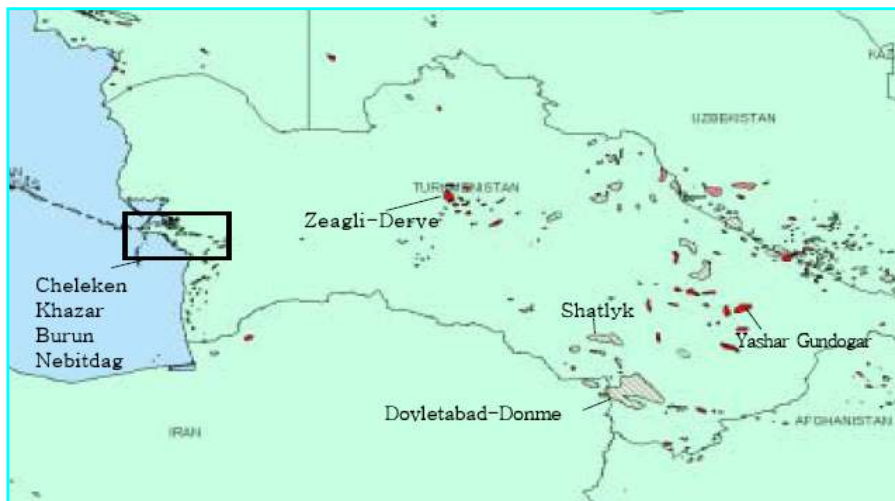
□ 투르크메니스탄에는 약 180개의 광구에서 탐사와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광구는 국영기업인 TurkmenGaz, Turkmen- Neft, TurkmenGeology가 보유

〈표 III-2〉 투르크메니스탄 국영 에너지기업 현황

기 업 명	주요 기능	비 고
TurkmenNefteGaz	석유·가스 정유, 판매 및 수출	
TurkmenNeft	석유 생산 및 운송	
TurkmenGaz	가스 생산 및 운송	총 가스생산의 85%
TurkmenNeftegazStroi	석유·가스 건설 부문	
TurkmenGeologya	광구 탐사 및 개발	

- 주요 유·가스전은 투르크메니스탄 서부 카스피해 지역과 동남부지역 Amu Darya 분지에 위치하며, 최대 가스전은 Amu Darya 분지의 Dauletabad-Donmez 광구로 천연가스 매장량의 절반 이상이 동 광구에 매장되어 있음.
- 투르크메니스탄이 1996년 PSA방식을 도입한 이래 현재 6개 외국기업들이 PSA 방식을 통해 유·가스전 개발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음.
 - 육상광구(3개) : Nebit Dag, Khazar, Amu Darya강 동안(東岸) 프로젝트
 - 해상광구(3개) : Cheleken, Block-1, Block 11-12 프로젝트

〈그림 III-1〉 투르크메니스탄 주요 유전·가스전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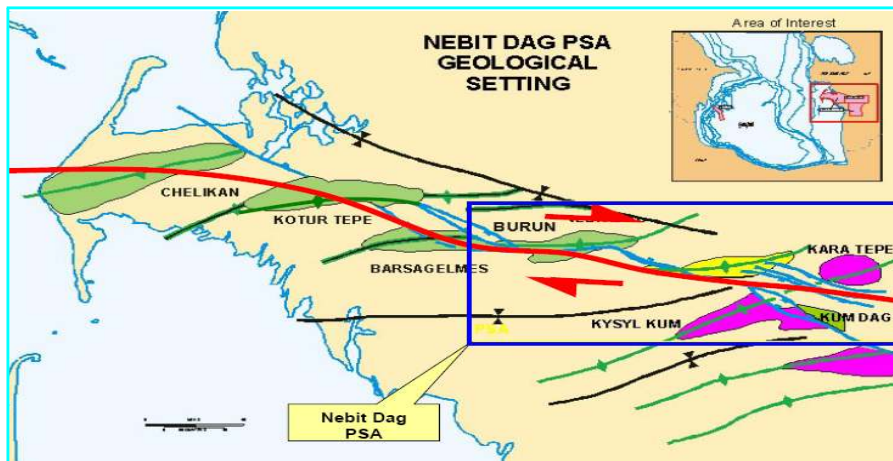


(2) 생산물분배계약(PSA) 프로젝트 현황

□ Nebit Dag 프로젝트

- 위치 및 광구 : 투르크메니스탄 서부지역, 5개 육상광구
- 운영회사 : Burren Energy(영)¹⁾
- 투자금액 : 2006년까지 4.5억 달러 투자
- 매 장 량 : 원유 83백만 배럴, 가스 200억m³
- 생 산 량 : 원유 19천b/d (2005년)

〈그림 III-2〉 Nebit Dag 광구



□ Khazar 프로젝트

- 위치 및 광구 : 투르크메니스탄 서부지역, 1개 육상광구(Eastern Cheleken)

1) 2008년 2월 이태리계 석유메이저인 Eni사가 Burren Energy사 매입

- 투자기업
 - TurkmenNneft(52%) : 프로젝트 운영(탐사, 개발, 생산)
 - Mitro International(오스트리아, 48%) : 파이낸싱, 기술
- 투자금액 : 2006년까지 2.3억 달러 투자
- 계약기간 : 25년. 만기후 5년 연장 가능
- 매 장 량 : 원유 35백만 배럴, 가스 40억 m³
- 생 산 량 : 원유 2.7백만 배럴, 가스 0.8억 m³(2005년)

□ Amu Darya강 동안 프로젝트

- 위치 및 광구 : Amu Darya강 東岸지역 육상 가스전
- 운영회사 : CNPC(중국)
- 매 장 량 : 가스 1.3조m³
- 생 산 량 : 연 170억m³ 예상
- 2007년 7월 계약 체결

〈그림 III-3〉 Amu Darya강 東岸 가스전



□ Cheleken 프로젝트

- 위치 및 광구 : 카스피해지역, 2개 해상광구
- 운영회사 : Dragon Oil(UAE)
- 투자금액 : 2006년까지 6.2억 달러 투자
- 계약기간 : 25년, 기간만료후 기간연장(최저 10년)에 대한 독점협상권 보유
- 매 장 량 : 원유 6억 배럴, 가스 991억 m³
- 생 산 량 : 원유 41천 b/d(2008년)

〈그림 III-4〉 Cheleken 광구



□ Block-1 프로젝트

- 위치 및 광구 : 카스피해지역, 5개 해상광구
- 운영회사 : Petronas(말레이시아)
- 계약기간 : 25년
- 투자금액 : 2006년까지 7.1억 달러 투자
- 매 장 량 : 원유 20백만 배럴, 가스 51억m³
- 생 산 량 : 원유 10천b/d(2006)

□ Block-11,12 프로젝트

- 위치 및 광구 : 카스피해지역, 해상광구
- 운영회사 : Maersk Oil(덴), Wintershall(독), ONGC(인도)
- 계약기간 : 25년

- 기 타 : 현재 탐사작업 진행중

〈표 III-3〉 투르크메니스탄 PSA 계약 체결현황

프로젝트명 (계약체결)	프로젝트 운영업체	투자금액 (~2006년)	추정 매장량	비 고
Nebit Dag (2000)	Burren Energy(영)	US\$4.5억	83백만 배럴, 200억 m ³	- 투르크 서부 육상 5개 광구
Khazar (2000)	- Mitro Int'l(호,48%) : 파이낸싱, 기술 - TurkmenNefit(52%) : 탐사, 개발, 생산	US\$2.3억 (Mitro Int'l)	35백만 배럴, 40억 m ³	- Cheleken 동부 육상 1개 광구
Amu Darya (2007)	CNPC(중)	-	가스 1,3조 m ³	- 투르크 동부 육상가스전
Cheleken (1999년)	Dragon Oil(UAE)	US\$6.2억	6억 배럴, 991억 m ³	- 카스피해지역 2개 해상광구
Block-1 (1996)	Petronas(말련)	US\$7.1억	20백만 배럴, 51억 m ³	- 카스피해지역 5개 해상광구
Block 11-12 (2002)	- Maersk Oil(덴) : 36% - Wintershall(독) : 34% - ONGC(인도) : 30%	-	-	- 카스피해지역 해상광구 - 탐사('03-'07년)

(3) 신규 유·가스전 개발 현황

□ 카스피해(Caspian Sea) 해상광구

- 현재 투르크메니스탄에는 31개의 해상광구가 있으나, 주변국과의 영유권 문제 등으로 개발이 지연되고 있음.
- 러시아 Lukoil사가 미국 ConocoPhillips사와 공동으로 카스피해 해상 19, 20, 21 광구 개발권 획득 추진중이며, 러시아 기업들과 투르크메니스탄 국영 에너지기업 TurkmenNeft이 구성한 Zarit컨소시엄²⁾이 28, 29, 30, 31 광구 개발에 참여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음.
- 그 외에 BP, Chevron, Shell, Eni 등 서방 메이저들과 카자흐스탄 국영 석유가스회사 등이 카스피해 해상광구 개발에의 참여를 추진하고 있음.

□ South Yolotan-Osman 육상가스전 개발

- 2006년 투르크메니스탄 동남부지역에서 세계 4~5위 규모의 육상가스전(South Yolotan-Osman) 발견되었음.
- 2008년 영국 GCA의 탐사결과 South Yolotan-Osman 가스전의 매장량은 최저 4조m³ 최대 14조m³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
- 동 가스전 발견으로 투르크메니스탄이 러시아, 중국 및 이란과 체결한 연간 약 100 억m³ 규모의 장기 가스공급계약 이행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해소됨.

2) Zarit 컨소시엄 구성 : 러시아 Rosneft(31%), Itera(31%) 및 ZarubezhNef(23%), 투르크메니스탄 TurkmenNeft(15%)

〈그림 III-5〉 South Yolotan-Osman 가스전 위치도



- 동 가스전은 고온, 고압력, 고유탄의 유탄 등으로 인해 개발에 고도의 기술과 막대한 자본이 소요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동 가스전을 자체 개발한다는 계획이나, 현재 러시아 Gazprom 및 중국 CNPC사 등 많은 외국기업들이 동 가스전 개발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음.

3.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1) 기존 가스 파이프라인

□ Central Asia-Center(CAC) 파이프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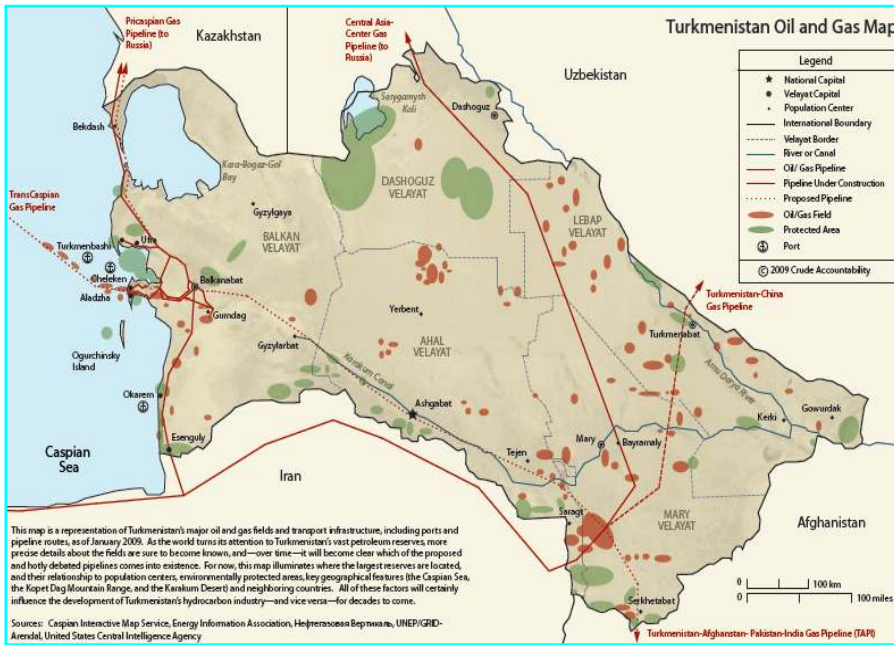
- 구소련시절 중앙아시아지역 가스의 수송을 위해 건설된 가스관으로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을 거쳐 러시아 중앙가스관과 연결되어 있음.

- CAC 가스관은 투르크메니스탄 동남부지역 가스전에서 시작하여 우즈베키스탄 서부, 카자흐스탄을 거쳐 러시아로 연결되는 동부 라인(CAC-1,2,4,5)과 투르크메니스탄 서부 카스피해지역에서 시작하여 카자흐스탄을 거쳐 러시아로 연결되는 서부 라인(CAC-3)으로 구성되어 있음.
- 현재 투르크메니스탄의 가스 수출의 약 90%는 CAC 동부라인을 통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로 수출되고 있음.
- CAC 동부라인은 투르크멘가스(TurkmenGaz)가 운영하고 있으며, 가스 수송능력은 연간 440억 m^3 이며, 2010년까지는 550억 m^3 , 이후 가스관 현대화를 통해 900억 m^3 까지 확장될 계획임.
- 투르크메니스탄은 현재 CAC라인을 확장 및 시설 교체를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러시아 Itera사가 카라쿰(Karakum) 사막 가스전과 CAC라인을 연결하는 가스관 건설에 참여하기로 하였음.
- CAC 서부라인은 투르크멘네프트가스스트로이(TurkmenNeftegaz- Stroi)가 운영하는 연간 수송능력 130억 m^3 규모의 유럽행 가스 수출 루트임.

□ Korpeje-Kurtkoy 파이프라인

- 1997년 건설된 러시아를 경유하지 않는 최초의 가스관으로 카스피해 남부지역과 이란 북부지역을 연결하며 연간 수송능력 135억 m^3 에 달함.

<그림 III-6> 투르크메니스탄 석유, 가스 Map



(2) 신규 가스 파이프라인 프로젝트

□ 카스피해 동안(東岸) 파이프라인(Pre-Caspian Pipeline)

- 카스피해 동쪽 해안을 따라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카자흐스탄을 거쳐 러시아와 연결되는 기존 CAC-3 Pipeline 가스관과 병행하는 루트임.
- 2007년 5월 투르크메니스탄, 러시아, 카자흐스탄 3국 정상들이 동 파이프라인 건설에 합의하였으며, 2007년 12월 이와 관련된 MOU가 체결되었음.

- 가스 수송능력은 연간 200억 m³ 수준이며, 2009년 하반기에 착공될 예정임.
- 동 파이프라인은 러시아가 EU의 카스피해경유 파이프라인(Trans-Caspian Pipeline) 건설을 견제하고 투르크메니스탄으로부터의 가스 도입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루트임.

□ 카스피해 경유 파이프라인(Trans-Caspian Pipeline)

- 투르크메니스탄 천연가스를 카스피해 해저를 통과하여 아제르바이잔, 그루지야를 거쳐 터키와 유럽으로 연결되는 루트임.
- 동 파이프라인은 나부코(Nabucco) 가스 파이프라인과 연결되어 중앙아시아 가스를 러시아를 우회하여 유럽으로 직접 수출할 수 있는 루트로 EU측이 건설을 지지하고 있음.
- 그러나, 러시아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고 앞으로 러시아가 가스 수입가격을 유럽시장 가격과 연동하여 지불할 예정으로 있어 중앙아시아 국가들 입장에서는 경제성이 떨어지는 루트로 실현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됨.

□ 투르크메니스탄-중국 파이프라인(Turkmenistan-China Pipeline)

-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을 경유하여 중국으로 연결되는 가스관으로 2007년 착공하여 2009년말 완공될 예정이며 수송능력은 연간 400억m³임.

□ Turkmenistan-Afghanistan-Pakistan-India(TAPI) Pipeline

- 투르크메니스탄 최대 가스전인 Dauletabat 가스전에서 아프가니스탄을 경유하여 파키스탄과 인도 Fazilka까지 연결되는 총 길이 1,680 km 가스관임.
- 총 76억 달러의 건설비용이 예상되며, ADB(Asia Development Bank)가 사업타당성 검토에서부터 자금조달 등 동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음.
- 가스 수송능력은 연간 320억m³ 규모로 2008년 4월 당사국간 기본계약(Framework Agreement)이 체결되었으며 2010년 착공하여 2015년부터 가스수송을 개시할 예정으로 있음.

4. 정유 및 석유화학 산업

(1) 최근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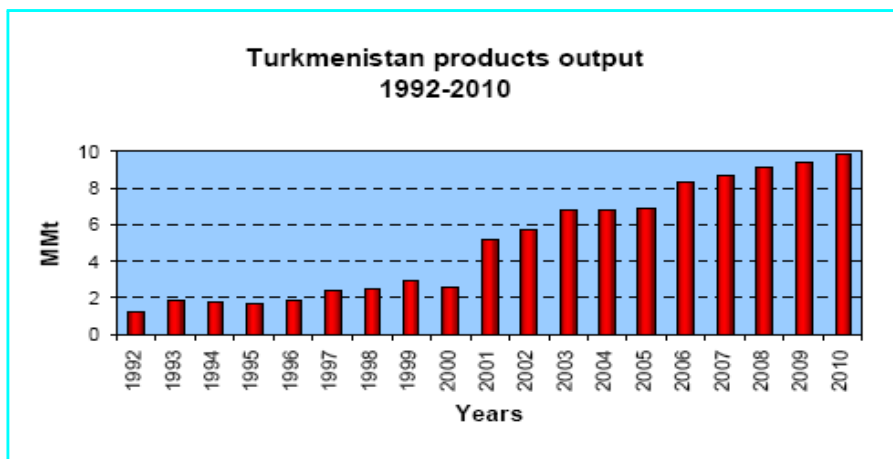
□ 투르크메니스탄 정유산업은 소비에트 붕괴 이후에도 정부 주도하에 꾸준한 발전 지속

- 현재 투르크멘바쉬(Turkmenbashi)와 세이디(Seidi)의 2개 국영 정유공장과 1개의 민간 정유공장이 있으며, 정유능력은 237천 b/d 상당임.
- 정유공장은 주요 유전·가스전 인근지역에 위치하며 카스피해 인근지역에서 추출된 원유는 Turkmenbashi 공장, 투르크메니스탄 동부지역에서 생산되는 원유는 Seidi 공장에서 정제되고 있음.
- 현 베르디무하메도프(Berdymukhamedov) 대통령이 집권한 2007년 이후 정부는 석유 산업과 석유화학산업 개발을 위한 통합프로그램 수립, 시행중에 있음.

□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정유공장 신규 건설 및 현대화 추진

- 정부 주도하에 총 약 40억 달러 규모의 Turkmenbashi 및 Seidi 정유공장 현대화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음.
- 이와는 별도로 2002년 이후부터 10만 b/d 규모의 정제능력을 갖춘 정유공장 건설 프로젝트도 추진되고 있음.
- 2002년 Turkmenbashi 정유공장 성능개선이 완료되었으며, 2004년에는 고유황유를 정제하는 Seidi 정유공장의 성능개선 계획이 발표됨.
- 2007년초 이후 Turkmenbashi Oil Refining Complex(TKNPZ) 시설 확장 및 원료, 석유화학제품 저장소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Stroitransgaz 등이 동 프로젝트에 대한 장비 및 부품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짐.

〈그림 III-7〉 투르크메니스탄 정유능력



자료: IHS Energy

-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세이디(Seidi) 정유공장을 원유 정제 이외의 폴리프로필렌 등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복합단지로 조성할 계획임.

(2) 정유 및 석유화학 산업 단지

가. 투르크멘바쉬 정유공장(Turkmenbashi Refinery Complex)

- 위치 : 투르크메니스탄 서부 카스피해 연안 위치
- 운영회사 : TurkmenNefteGaz
- 정제능력 : 원유 117천 b/d
- 시설 현대화 및 성능 개선 위해 총 14억 달러를 투자
 - 정유시설 성능 개선
 - 1996년 정유시설 성능개선을 위해 5억 달러 투자
 - 이스라엘 Merhav Corp.사가 계약자로 참여하였으며, 소요자금은 일본, 독일, 프랑스, 터키 ECA로부터 조달
 - 폴리프로필렌 공장 건설
 - 1997년 4억 달러를 투자하여 투르크메니스탄 최초의 폴리프로필렌(PP) 공장 건설 투자, 2001년 공장 가동 개시
 - Itochu, JGC, Nissho-Iwai 등 일본기업들이 계약자로 참여하였으며, 소요자금은 이스라엘 Merhav Corp.사가 주선

- Gas Booster System 개발
 - o 2007년 gas booster system 개발에 1.8억 달러 투자
 - o 이스라엘 Bateman Engineering Group이 주계약자로 참여
- 기타 윤활유 생산공장 및 36,000 b/d 규모의 접촉분해기(catalytic cracker) 및 15,000 b/d의 반응기(catalytic reformer) 건설 등

〈그림 III-8〉 투르크메니스탄 정유공장 위치



나. 세이디 정유공장(Seidi Refinery Complex)

- 위치 : Amu Darya 강 인근 소재(우즈베키스탄 국경 인근)
- 운영회사 : TurkmenNefteGaz
- 정제능력 : 원유 121천 b/d

- 1990년대 중반 이후 2005년까지는 우즈베키스탄 Kokdumalak 유전에서 생산된 원유를 정제하여 왔으나, 2006년 이후에는 투르크메니스탄 Yolotan 유전에서 생산된 원유를 주로 정제하고 있음.
- Seidi 정유공장에서는 가스콘덴세이트(Gas Condensate)도 정제되고 있음.

□ 시설 현대화, 성능 개선 및 폴리프로필렌 공장 건설 등을 위해 총 10억 달러 이상의 투자가 진행중이며, 많은 국가들이 동 프로젝트 참여에 관심을 보이고 있음.

(3) 외국기업 진출현황

□ 현 베르디무하메도프(Berdymukhamedov) 대통령은 정유 및 석유화학 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

- 투르크메니스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유공장 현대화 및 석유화학공장 건설 프로젝트에는 일본, 독일, 미국, 프랑스, 터키, 중국 등 많은 외국기업이 계약자로 참여하고 있음.

□ Dragon Oil, 최초의 외국인 소유 정유공장 건설

- 2007년 3월 아랍에미레이트의 Dragon Oil이 Hazar에 5만 b/d의 정유능력을 갖춘 정유공장을 가동중임.
- Hazar 정유공장에서는 새로운 정유처리시설(New Processing Facility)를 갖추고 Dragon사가 생산하는 경질유(light/sweet crude oil)가 정제됨.

□ IPIC사, 암모니아/요소 생산공장 건설 참여

- 2008년 8월, 아랍에미레이트의 International Petroleum Investment Co.(IPIC)³⁾와 투르크메니스탄 국영가스회사 TurkmenGaz사가 암모니아/요소 생산 합작법인 (Joint-Venture) 설립을 위한 MOU를 체결함.
- 동 공장은 투르크메니스탄 남부지역에 건설될 예정이며, 생산능력은 연산 암모니아/요소 1백만톤 규모
- 총 소요비용 5억 달러에 이르며, 천연가스는 TurkmenGaz가 공급

5. 전력산업

□ 전력산업은 국가독점산업이며 잉여 전력을 인근국가에 수출

- 투르크메니스탄은 풍부한 천연가스를 바탕으로 국내 소비량 이상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으며, 잉여전력(생산량의 약 10%)을 아프가니스탄, 아르메니아, 이란, 파키스탄 등 인근 국가에 수출하고 있음.
- 천연가스를 연료로 하는 화력발전이 대부분이며, 수력발전은 1%에 불과함.
- 주요 발전소로는 Mary 화력발전소, Hindukush 수력발전소 등이 있음.

3) IPIC사는 현재까지 투르크메니스탄에 약 10억 달러를 투자하였으며, 향후 5년간 유전 개발, 인프라 투자 등에 10억 달러를 추가 투자할 계획

〈표 III-4〉 투르크메니스탄 전력생산 및 소비 현황 (2006년)

생산량	소비량	수출량
128.3억 KWh	95.8억 KWh	13.4억 KWh

자료: The World Factbook, CIA

□ 구소련 시절 건설된 생산설비가 노후화되어 신규 발전소 건설, 기존 발전소 개보수 등 전력 생산능력 향상과 인프라 개선에 주력

- 열병합발전소 신규 건설, 마리(Mary) 발전소 현대화, 베즈메인(Buzmein) 발전소 개보수 등을 통해 전력 생산능력을 증대시킬 계획임.
- 미국 GE의 기술 지원을 통해 에너지 손실율(약 40%)이 높은 구소련 시대의 가스터빈 교체, 송전선 개보수 등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개선에도 주력하고 있음.

〈표 III-5〉 전력산업 주요 프로젝트

단위: 백만 달러

부 문	프로젝트명	투자금액
발전소 건설	Kyzylatrek 열병합발전소	350
	Dashoguz 열병합발전소	175
	Turkmenbashi 열병합발전소	62
송전선 건설	Nebitdag, Serakhs, Kerki, Farab, Seidi, Dashoguz	15
송전망 연결	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1,150km)	290
전선생산시설	Ashbagat 전선생산설비 재건	30

6. 각국의 진출 전략 및 현황

(1) 러시아

□ 기존의 독점적 지위 유지 노력

- 러시아의 투르크메니스탄 진출 확대의 주요 목표는 미국, EU 및 중국 등 타 국가들의 진출을 막고 기존의 독점적 지위를 고수하는데 있음.
- 러시아는 투르크메니스탄의 주요 가스수출 루트인 구소련 시절 건설된 중앙아시아 가스관(CAC Pipeline)을 이용하여 투르크메니스탄 가스 수출량의 약 80%를 수입하여 왔음.
- 러시아 국영가스회사 가즈프롬은 우크라이나 및 유럽 등지로의 수출물량의 상당 부분을 투르크메니스탄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⁴⁾하고 있음.

□ 수입물량 확대를 위해 신규 가스관 건설 및 가스관 보수 지원

- 러시아는 투르크메니스탄 정부가 가스 수출선 다변화를 위해 중국, 유럽과 연결된 가스관 건설을 추진함에 따라 이를 견제하고 투르크메니스탄으로부터의 수입물량을 확대코자 신규 가스관 건설 및 가스관 보수 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 카스피해 동안(東岸)을 따라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카자흐스탄을 거쳐 러시아 중앙가스관과 연결되는 Pre-Caspian Pipeline 건설을 추진중임.

4) 2006년 러시아 가즈프롬(Gazprom)은 유럽 수출가스(1,600억㎥)의 1/4인 420억㎥ 가스를 투르크메니스탄으로부터 수입 조달

- 또한 1970년대 개통된 CAC 가스관이 노후화됨에 따라 수송능력을 확충을 위해 동 가스관 개보수 작업도 병행할 계획

□ 투르크메니스탄 가스 수입가격 인상

- 과거 독점적 지위에서 저가로 수입해 왔으나 투르크메니스탄 가스 수입물량 확보를 위해 수입가격을 인상하여 왔음.
- 2007년 11월 러시아와 투르크메니스탄은 가스가격을 2008년에는 1000m³당 130~150달러로 인상하고, 2009년부터는 유럽시장가격에 연동하여 결정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정치, 외교 및 군사적 협력 강화 추진

- 러시아는 다자간 협력관계 강화를 통한 역내에서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투르크메니스탄의 CIS, 유라시아경제공동체(Eurasian Economic Community) 및 상하이협력기구(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가입을 설득하고 있음.

(2) 중 국

□ 에너지자원 확보 등 경제적 목표가 우선

- 중국의 투르크메니스탄과의 경제협력 강화는 정치적인 목적 보다는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에너지자원 확보라는 경제적 목적이 우선

□ 장기 가스공급계약 체결

- 2006년 4월 중국 CNPC와 투르크메니스탄 TurkmenGaz간에 2009년부터 30년간 총 300억m³ 규모의 장기가스공급계약이 체결됨.

- 동 계약은 당초 니야조프(Niyazov) 前대통령 체제하에 체결된 계약으로 실행가능성이 의문시 되었으나, 2007년 7월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을 당시 동 계약의 이행을 재확인함.
- 2008년 8월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투르크메니스탄 방문으로 연간 가스공급량이 당초 300억m³ 규모에서 400억m³ 규모로 증가됨.

□ 중앙아시아-중국 가스관(Central Asia-China Pipeline) 건설 추진

- 중국은 중앙아시아 에너지자원의 장기 안정적 확보를 위해 자국 주도하의 신규 가스관 건설을 추진하고 있음.
- 2006년 4월 투르크메니스탄과 중국은 ‘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중국 가스관(Central Asia-China Pipeline)’ 신규 건설에 합의
- 동 가스관 건설에는 10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2007년 8월 Central Asia Gas Pipeline Company가 설립되어 현재 공사가 진행중임.

□ Amu Darya강 지역 육상가스전 PSA계약 체결

- 2007년 7월 중국 CNPC는 투르크메니스탄 정부와 Amu Darya강 인근 Bagtiyalyk 가스전 개발을 위한 생산물분배계약(PSA)을 체결함.
-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해상광구에 대해서만 외국인참여를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동 계약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

(3) 미국 및 EU

□ 서방 에너지기업의 에너지개발 투자 참여 확대

- 현재 투르크메니스탄령 카스피해지역 탐사에 Burren Energy(영), Maersk(덴), Wintershall(독) 및 Mitro Int'l(오) 등 다수의 서방기업이 참여중임.
- 미국의 Chevron사도 2007년 6월 투르크메니스탄에 지사를 설립, 카스피해지역 개발 투자에 적극 참여할 계획으로 있음.

□ 러시아를 우회하는 가스관 건설 추진

- 중앙아시아지역에서의 영향력 확대와 에너지자원 확보를 위해 러시아를 우회하는 카스피해 횡단 가스관(Trans-Caspian Pipeline) 신규 건설을 추진하고 있음.

□ 미국은 정치적 목적 우선, EU는 에너지자원 확보에 초점

- 미국은 서방의 투르크메니스탄 에너지개발 참여 및 가스수출루트 다양화를 지원함으로써 러시아의 중앙아시아 지역내 영향력 약화를 도모
- 미국은 9.11사태 이후 아프가니스탄과 이란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투르크메니스탄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인식, 정치 군사부문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 EU는 러시아 가즈프롬(Gazprom)에 대한 가스의존도를 낮추고 에너지 공급원을 다양화하기 위한 경제적 목적에 보다 초점을 두고 있는 실정임.

(4) 인도, 파키스탄

□ TAPI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본격 추진

- 최근 투르크메니스탄이 수출루트 다변화를 위해 인도, 파키스탄에 대한 천연가스 수출에 관심을 보임에 따라 아프가니스탄을 경유하여 인도와 파키스탄까지 연결되는 TAPI 가스파이프라인 건설이 본격 추진되고 있음.
- 인도와 파키스탄은 자국의 가스수요 확대에 대처하기 위해 10년전부터 투르크메니스탄으로부터의 가스 도입을 추진해 왔으나, 가스 파이프라인이 통과하는 아프가니스탄의 정세불안과 산악지대로서 투자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것이 걸림돌로 작용해 옴.

□ 인도는 ONGC가 카스피해 해상광구 Block 11-12의 지분 30%를 매입하는 등 투르크메니스탄 에너지 개발사업 참여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음.

IV. 광물자원 현황

- 투르크메니스탄은 천연가스, 원유 이외에 유황, 암염, 암모니아, 브롬, 요오드, 석고 등 다양한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 특히, 요오드와 붕소의 경우 구 소련지역에 매장된 양의 70% 이상이 투르크메니스탄지역에 매장되어 있으며, 카스피해 연안의 Kara-Bogaz Gol 광산에서는 구소련시대 50%의 황산나트륨이 생산되었음.
 - 투르크메니스탄에는 2001년 기준으로 총 162개의 광상(鑛床)이 있으며, 현재 62개의 광상이 개발되고 있음.

- 천연가스·원유 위주의 자원개발정책으로 기타 광물자원 개발은 부진
 -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천연가스 및 석유 중심의 자원개발에 중점을 두는 정책을 추진해 옴으로써 기타 광물자원 개발은 활발하지 않은 실정임.
 - 투르크메니스탄 자원개발에 진출하고 있는 외국기업들도 주로 천연가스, 석유 등 에너지자원 개발과 인프라 산업 및 정유산업, 석유화학산업에 집중되어 있음.

- 광물자원 생산기업은 모두 정부 각 부처에 산하의 국영기업이며, 외국기업에는 합작기업(Joint-Venture) 방식으로만 참여 허용

- 주요 광물자원 생산기업으로는 Arpaklenskiy barite-witherite enterprise, Cheleken ozokerite enterprise, Gaurdak sulfur plant, Karabogazsulfate association, Kara-Kum sulfur plant, Oglanly bentonite mining enterprises 등이 있음.

〈표 IV-1〉 투르크메니스탄 주요 광물자원 생산현황 (2005년)

단위: 톤

광 물 명	연간 생산량	주요 생산기업	주요 매장지역
Amonia (암모니아)	85,000	Maryzoat Association	Mary
Bentonite (벤토나이트)	50,000	Oglanly Mine	Oglanly
Bromine (브롬)	150	Cheleken plant, Nebitdag plant	Cheleken, Vyshka
Cement (시멘트)	450,000	Bezmeinskiy cement plant	Bezmeinskiy
Gypsum (석고)	100,000	IA Turkmenmineral	Mukry, Tagorin
Iodine (요오드)	270,000	Cheleken plant	Cheleken
Lime (석회석)	16,000	-	Gaurdak
Salt (암염)	215,000	Kuulinskoye deposit, Gaurdak deposit	Turkmenbashi, Guardak
Sodium sulfate (황산나트륨)	60,000	Karabogazsulfate Association	Bekdash, Kara-Bogaz Lagoon
Sulfur (유황)	9,000	IA Turkmenmineral	Gora, Gaurdak, Kara-Kum

자료: USGS, 2005 Minerals Year Book

V. 에너지산업 정책 및 관련 법규

1. 에너지산업 정책

(1) 기본원칙

□ 국가 주도의 에너지자원 관리·개발

- 투르크메니스탄은 에너지자원을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국가 주도로 개발 및 관리하고 있음.
- 석유·가스 산업은 국가독점산업으로 개발, 건설, 판매 등 분야별로 별도의 국영기업 들 두고 담당토록 하고 있음.
- 2007년 3월,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석유·가스 자원관리청(State Agency for the Management and Use of Hydrocarbon Resources)이 신설됨.
- 2008년 8월 석유자원법(Petroleum Law) 개정으로 석유·가스 자원관리청의 권한이 대 폭 강화되었으며, 현재 각종 에너지 프로젝트 평가, 라이선스 발급 협상 및 계약 체결 은 석유·가스 자원관리청이 담당하고 있음.

□ 외국인에 대한 에너지산업 개방 확대

- 2007년 현 베르디무하메도프(Berdymukhamedov) 대통령이 집권한 이래 자본, 기술 및 경험이 풍부한 외국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해 에너지산업에 대한 외국기업의 참여 를 확대하고 있음.
- 그러나, 자국 에너지산업에 대한 특정국가의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국가의 기업들 을 에너지산업 프로젝트에 참여시키고 있음.
- 계약체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개입찰을 통한 계약체결을 원칙으로 함.

□ 육상유전 자체 개발, 해상유전 외국인참여 허용 원칙

- 투르크메니스탄은 육상유전은 자국기업이 자체 개발하고 해상유전 개발에 대해서만 외국인 참여를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다만, 육상유전의 경우에도 시추 및 정제시설 등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는 외국인 참

여를 허용함.

- 그러나, 예외적으로 중국 CNPC에 대하여는 육상유전 개발 참여를 허용하였으며, 기술력이나 자금력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육상유전에 대해서도 외국인에게 개방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외국인에 대하여는 생산물분배계약(Production-Sharing Agreement; PSA) 또는 합작계약(Joint-Venture) 방식으로 참여시키고 있으나, 대부분은 PSA 방식을 택하고 있음.

□ 수출시장 다변화 추진

- 러시아에 대한 수출의존도⁵⁾를 낮추고 유럽, 이란, 중국, 터키 등으로 수출시장으로 다변화하기 위해 신규 가스파이프라인 건설을 추진하고 있음.

5) 투르크메니스탄은 구소련시절 건설된 중앙아시아 가스관(CAC Pipeline)을 통해 천연가스 수출의 80% 이상을 러시아에 수출

- 투르크메니스탄은 러시아 이외에 타 국가들과의 장기가스공급계약 체결을 확대하고 있음.

〈표 V-1〉 투르크메니스탄의 장기가스공급계약 체결현황

국가	체결년도	계약기간	공급물량	비 고
러시아	2003년	25년	연 50bcm	- 2009년부터 연 80bcm 예상
중 국	2006년	30년	연 40bcm	- 2009년부터 공급 계획
이 란	1996년	-	연 10bcm	- 2006년 14bcm 증액 계약 체결

(2) 석유·가스부문 개발전략 2020

- 2005년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석유·가스부문 개발전략 2020 (Oil and Gas Sector Development Strategy towards 2020)”을 발표
- 주요 골자는 2020년까지 약 600억 달러를 투자하여 연간 생산량을 석유 1억톤, 천연가스 2,400억m³으로 늘리는 것이며,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소요자금의 약 40%를 PSA방식을 통한 외국인 투자자금으로 조달할 계획임.
- 투르크메니스탄 정부의 우선 개발 및 투자 부문
 - ① 카스피해 유역 해상유전 개발
 - ② 육상유전 탐사 및 개발
 - ③ 에너지산업 인프라(특히 파이프라인 및 통신) 개발
 - ④ 정유, 석유화학 및 관련 서비스 부문 개발
 - ⑤ 국제시장에서의 마케팅 강화

2. 석유자원법(Petroleum Law)

□ 석유자원법(Petroleum Law) 개요

- 1996년에 제정되어 2005년 12월, 2008년 8월 각각 개정되었으며, 외국기업이 유가스선 광구 취득시 투르크메니스탄 정부와 생산물분배계약(PSA)을 체결하는 것을 골자로 함.
- 투르크메니스탄 내각이 석유·가스자원 개발에 관한 최종 허가권 보유

□ 석유자원법(Petroleum Law) 주요 내용

① 탐사 및 개발 면허

-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개발 및 탐사를 위한 광구를 분양하고, 탐사에 성공한 기업에 생산 라이선스 부여

② 면허 기간

- 탐사면허 : 6년. 탐사기간중 의무사항 준수시 2차에 걸쳐 2년씩 연장 가능
- 생산면허 : 20년. 5년 연장 가능하나 예외적으로 10년 연장도 가능

③ 개발 의무

- 사업자는 개발 광구에 투입된 자본 및 개발계획(공정률 등)을 투르크메니스탄 정부와 협의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비용은 15~35백만 달러임.

④ 로열티

- 생산에 따른 로열티 지급액은 생산규모에 따라 결정되며, 당사자간 협상에 따라 5차례 인상 가능
-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생산량에 따라 통상 3~15% 정도의 로열티를 징수해 오고 있음.

⑤ 생산물 분배

- 로열티 지급 및 투자비용 보전 이후 남은 생산량에 대해서는 R-factor(누적순익과 누적비용과의 비율)에 따라 투르크메니스탄 정부와 사업자가 분배

〈표 V-2〉 R-factor별 사업자 분배 몫

R-factor	사업자 분배 몫(%)
0 ~ 1.0	50
1.0 ~ 1.5	40
1.5 ~ 2.0	30
2.0 ~ 2.5	20
2.5 ~	10

자료: IHS Energy

⑥ 우선 구매

- 생산물분배계약 하에서 투르크메니스탄 정부측에 할당된 생산량이 국내수요 보다 적을 경우,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생산자에게 할당된 생산량을 우선 구매할 권리를 보유

⑦ 광구 반납

- 2000년 제정된 광구면허 규정에 따르면 매 탐사단계마다 유망 구조로 판명되지 않아 개발하지 않는 광구에 대해서는 면적의 15~20%를 반납
- 90일전 사전통지로 분양받은 광구의 전부 또는 일부 반납 가능

VI. 외국인 투자환경

1. 관련 법률⁶⁾

□ 외국인투자 기본법률

- 외국인투자법(Law on Foreign Investment, 1993 개정)
- 투자법(Law on Investment, 1993 개정)
- 회사법(Law on Corporation, 1999)

□ 현지 영업활동 관련 법률

- 기업법(Law on Enterprises, 2000)
- 영업활동법(Law on Business Activities, 1993 개정)
- 민법(Civil Code, 2000)
- 토지법(Land Code, 2004)

□ 석유자원법(Petroleum Law, 2008. 8월 개정)

- 석유자원법은 석유가스 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기본법으로 탐사 및 채굴 허가, 조세, 회계, 투자자의 권리 및 의무 등을 정하고 있으며 세법 등 기타 법률보다 우선 적용됨.

6) 투르크메니스탄에서의 외국인투자는 관련 법률 이외에 양자간, 다자간 투자계약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음

2. 투자 우대조치 및 제약사항

(1) 투자 우대조치

□ 투자 인센티브 부여는 건별로 대통령에 의해 결정

- 세금 감면, 기타 특권 부여 등 투자 우대조치는 개별 투자건별(case-by-case)로 대통령에 의해 결정됨.

□ 생산시설 등에 대한 관세 면제

- 등록자본의 일부로 구매되는 장비, 생산시설 및 투자자 개인의 가정용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가 면제됨.

□ 에너지 부문에 대한 투자 우대조치

- 에너지 부문에 대한 투자는 석유자원법(Petroleum Law)에 따라 생산물분배계약(Product Sharing Agreement)이 체결되며, 동 계약에 따라 투자 인센티브가 부여됨.
- 석유자원법은 세법(Tax Code) 등 타 관련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됨.

□ 자유무역지역(Foreign Trade Zone)

- 1993년 'Law on Economic Zones for Free Enterprise'이 제정되어 현재까지 10개의 자유무역지역(Foreign Trade Zone)가 설치되어 있음.

- 법적으로는 세제, 관세 등 다양한 혜택이 부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정부의 잦은 간섭, 금융지원 부족, 인프라 및 통신시설 미비 등으로 인해 Ashgabat 국제공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표 VI-1〉 자유무역지대 설치지역 및 우대내용

자유무역지대	주요 우대내용
Mary-Bayramaly, Ekerem-Hazar, Saragt, Turkmenabat-Seydi, Bakharly-Serdar, Ashgabat-Anew, Ashgabat-Abadan, Guneshli, Ashgabat International Airport, Dashoguz Airport(총 10개 지역)	- 국유화 금지, 외국인 차별대우 금지 - 이익금 재투자시 소득세 면제 - 법인세 납부후 이익금 송금 보장 - 외국인 지분 30% 이상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 - 가격 책정권 보장

□ 자유관광지역(Free Tourist Zone)

- 2007년 7월 카스피해지역의 관광산업 개발을 위해 카스피해 해안 16km 구간에 “Avaza 자유관광지역”이 설치되었음.
- 자유관광지역(Free Tourist Zone)내 호텔 및 오락 시설 투자시에는 세제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함.
 - 경제금융부(MEF) 등록비 면제
 - 달러화 환전 보장(채무상환, 건설비용 및 장비, 상품 구입 등 목적)
 - 관광객용 숙박업 및 요식업체 대한 15년간 소득세 면제
 - 관광관련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VAT) 면제 등
 - 재산세 면제

(2) 투자 제약사항

□ 투자 허가에 대한 정치적 결정

- 외국인투자에 대한 허가가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경향이 있음. 즉 정치적으로 우호적인 국가의 투자자가 입찰이나 사업권 경쟁에서 유리함.

□ 법 적용의 일관성 결여

-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법률이 다수 도입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동 법률들이 일관성 있게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대통령 포고령에 의해 효력이 변경되는 경우가 다수임.

□ 국제표준(International Business Norms)의 부재

- 외국인 투자자는 투르크메니스탄의 환경 및 위생 표준을 의무적으로 준수하여야 함.
- 외국인 투자자가 생산하는 제품은 투르크메니스탄의 국가표준 이상의 품질이어야 함.
- 외국인 투자자의 자산은 국영 보험회사(State Insurance Company of Turkmenistan)에 부보되어야 함.
- 투르크메니스탄은 WTO에 가입하지 않고 있으며, 투자, 금융, 지적재산권 보호, 관세, 사유화 조치 등 WTO와 관련된 법률이 도입되어 있으나 일관성 있게 적용되고 있지 않음.

- 또한, 투르크메니스탄은 ‘무역 관련 투자조치에 관한 협정(TRIMS; the Agreement on Trade-Related Investment Measures)’의 가입국이 아님.

□ 재산 수용 가능성

-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과거 개인이나 기업의 자산에 대해 강제수용 조치가 종종 이루어졌으며, 수용시 그 보상도 시가보다 상당히 낮게 보상되었음.

3. 조세제도

(1) 개요

□ 2004년 11월 新세법이 도입된 이후 대부분의 세율이 변동없이 유지

- 새로운 세법 도입과 3회에 걸친 개정으로 세무당국의 규정 해석에 일관성이 결여되고 지방세무당국은 동 세법 규정에 대한 이해도가 낮을 것으로 우려됨.

□ 국제협약이 투르크메니스탄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

□ 우리나라와는 이중과세방지협정(double tax treaty)이 체결되어 있지 않음

- 구소련(USSR) 시대 체결된 이중과세방지협정을 계승하고 있으나, 현재 유효하게 적용되는 이중과세방지협정은 CIS국가, 서유럽국가 등 일부에 불과함.
- 세법상 국제조약이 국내법에 우선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이중과세방지협정이 당연히 적용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사전에 적용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국가 (18개국)

오스트리아, 아르메니아, 벨기에, 영국, 독일, 그루지야, 인도, 이란, 카자흐스탄, 파키스탄, 러시아, 슬로바키아, 미국, 터키,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프랑스, 일본

(2) 조세의 종류

□ 법인세(corporate income tax)

- 납부자 : 거주자 또는 투르크메니스탄 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외국기업
- 소득세율 : 투르크메니스탄 법인 8%, 기타 20%
- 과세대상소득 : 총수입에서 공제항목을 제외한 금액으로 판매수익 이외의 환차익, 보험금 등 부가적인 수익도 과세대상에 포함

- 공제항목 : 판매비, 급여, 감가상각, 채무상환, 금융비용, 세금 등은 소득에서 공제
 - o 감가상각 : 무상취득 자산, 비상업적 조직 및 공공기관의 자산은 제외
 - o 급여 : 공제항목이나, 물품 지급, 통근비 또는 여가활동 지원비는 제외
 - o 이자 : 영업활동과 관련된 채무에 대한 지급이자
 - o 순손실 : 3년 이내에서 비용항목으로 공제 가능
- 이전가격(transfer price) : 2004년 11월 1일 발효된 新세법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수출입거래 및 거래가격이 시장가격과 20% 이상 차이가 있다고 세무당국이 인정한 거래에 대해서 세무당국이 동 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원천징수세(income tax withholding)

- 투르크메니스탄 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외국법인이 투르크메니스탄 내에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며, 기본세율은 15%이나, 선박 및 항공기 리스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6% 세율이 적용됨.

□ 이익송금세(profit repatriation tax)

- 투르크메니스탄 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외국인 투자법인이 배당금을 본국으로 송금하는 경우 이익송금세로 송금액의 15%를 원천징수함.

□ 개인소득세(personal income tax)

- 납부자 : 모든 거주자. 단, 과세년도중 182일 이상 거주 외국인 포함
- 소득세율 : 총급여의 10%
- 비과세소득
 - 정부 지급 수당 또는 연금
 - 상속 또는 기증받은 현금 및 유사품
 - 일정 범위내의 출장비
 - 기업활동 외의 개인재산 판매수익
 - 산업재해 보상금
 - 생계수당
 - 은행 예금이자
 - 담보로 수취한 재산
- 개인소득세는 고용주가 원천징수하여 납부
- 고용주는 피고용인 총급여의 20% 상당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별도 납부

□ 부가가치세(VAT)

- 세 율 : 매출액의 15%. 단, 국가와의 거래시에는 예외 적용 가능
- 부가세 면제대상
 - 금융, 보험 및 의료 서비스, 의약품 판매, 음식료품 판매 등
 - 석유법의 적용을 받는 계약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면제 등 특혜 부여
- 영세율(zero-rate) 적용 : 수출품, 운송 서비스 및 석유법의 적용을 받는 계약자와 공 급물품

- 서류보관 : 부가세 납부와 관련된 기록은 관련서류(상업송장, VAT송장, 관련계약서, 통관서류) 원본과 함께 최소 5년간 보관
- 부가세 계산 및 납부 : 월 단위로 계산하고 익월 25일까지 납부

□ 기타 조세

- 재산세(Property Tax) : 영업활동에 사용되는 자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세율은 연평균 장부가가격의 1%

〈표 VI-2〉 조세의 종류 및 세율

종 류	세 율	과세대상
법인세 (Corporate Income Tax)	• 투르크메니스탄 법인 : 8% • 기타 법인: 20%	과세대상소득(총수입-비용공제)
이익송금세 (Profit Repatriation Tax)	15%	본국으로 송금되는 배당금
원천징수세 (Withholding Tax)	15% 단, 선박 또는 항공기 임대수입 6%	영구조직이 없는 외국인이 투르크메니스탄내에서 수취한 소득
부가가치세 (VAT)	15%	상품 및 서비스 매출액
소비세 (Excise Tax)	품목별 10%~30%	세법(Tax Code)에서 정한 품목
자원개발세 (Subsurface Use Tax)	석유 10%, 가스 22%	판매 또는 자체 소비한 천연자원
재산세 (Property Tax)	순장부가가격의 1%	사업목적용 위해 사용된 재산
개인소득세 (Personnel Income Tax)	10%	
사회보장세 (Social Security)	고용주 : 20% 피고용인(희망자) : 2% 이상	피고용인 월급여의 20%

자료: PriceWaterhouseCoopers, Doing Business Guide Turkmenistan, 2007-08

- 물품세(Excise Tax) : 물품세 부과대상 품목과 세율은 세법(Tax Code)에서 정하고 있으며 세율은 품목별로 10%~30%
- 자원개발세(Subsurface Use Tax) : 천연자원 추출 등을 위해 토지 또는 지하수를 이용하는 기업에 대해 부과되며, 세율은 추출하는 품목에 따라 다양하며 천연가스 생산의 경우 22%, 석유 생산의 경우 10%

4. 무역 및 관세 제도

□ 다자간 및 양자간 무역협정 체결은 거의 없음

-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타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FTA)도 거의 체결되지 않았음.
- CIS관세동맹에도 가입하지 않았으며, 이란을 통해 우크라이나, 방글라데시, 아르메니아 및 필리핀 4개국과의 3자 협정(trilateral agreement)이 체결되어 있음.
- 미국과 오스트리아는 투르크메니스탄에 대해 최혜국지위(MFN)를 부여하고 있음.

□ 수출입거래 및 투자프로젝트에 대한 국가 통제

- 모든 수출입거래와 투자프로젝트는 ‘국가상품원자재거래소(State Commodity and Raw Materials Exchange; SCRME⁷⁾’와 ‘경제금융부(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MEF)’에 의무적으로 등록되어야 함.

7) SCRME : 1994년 정부가 수출입거래 및 상품 도매거래 통제를 위해 설립한 투르크메니스탄내 유일한 거래소

- 수입계약은 물품이 투르크메니스탄 영내에 도착하기 이전 반드시 등록되어야 함.
- SCRME는 수출입 가격, 물량, 물품 종류, 계약의 적법 이행 여부 등 거래전반에 대해 통제함.
- SCRME에 등록시 계약당사자는 계약금액의 0.2%에 상당하는 수수료를 부담함.

□ 수출금지 품목 : 비료, 비철금속 및 동 합금, 비철금속 제품

□ 평균 관세율은 약 30% 수준

- 현재 94개 수입품목과 9개 수출품목에 대해 특별관세를 부과하며, 그 이외의 품목에 대해서는 5%의 일반관세가 부과됨.
- 관세율은 품목별로 10%~100%까지 적용되며 평균 관세율은 30% 수준임.

□ 자국 국영기업에 대해 관세 우대

- 모직 양탄자에 대한 수출관세 부과시 국영기업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100% 수출관세가 부과되고 있음.

5. 금융 및 외환 제도

□ 금융산업에 대한 국가 통제로 인해 자본이동이 자유롭지 않은 실정

- 투르크메니스탄 은행산업은 6개의 국영은행과 2개의 상업은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상업은행도 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음.
- 국영은행은 은행별로 지원부문이 특화되어 있으며, 국영기업에 대해 보조금 조건의 여신을 제공하고 있음.

〈표 VI-3〉 투르크메니스탄 국영은행별 주요 기능

은행명	주요 지원분야	비고
Turkmenvesheconombank (대외경제은행)	대외무역	- 투르크메니스탄 최대 은행 - 정부의 대외 자금창구
Dayhanbank	농업	
Turkmenbashy Bank	제조업	
Turkmenistan Bank	사회	
Halk Bank	예금, 소매금융	
President Bank	모기지론	

□ 상업은행의 국영기업앞 대출 금지

- 상업은행으로는 터키 Ziraat Bank와의 합작은행인 Turkmen-Turkish Bank와 파키스탄 National Bank of Pakistan의 지점이 있음.

□ 자본시장은 형성되어 있지 않음

- 1993년 제정된 ‘증권거래법(Law on Securities and Stock Exchanges)’에 증권의 발행, 매매 및 유통에 관한 기본원칙이 규정되어 있으며, ‘주식회사법(Law on Corporation)’에서도 보통주 및 우선주, 채권, 전환사채의 발행에 관한 규정이 있음.
- 그러나, 현재 투르크메니스탄에는 증권거래소가 존재하지 않고, 투자기업도 없어 자본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 외국인투자기업의 현지 금융조달은 불가능한 실정

- 정부의 은행산업 통제, 자본시장 미발달 등으로 인해 외국인투자기업이 현지에서 금융을 조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EBRD의 지분참여가 현지금융 조달의 유일한 방법임.

□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외환거래를 엄격히 통제

- 일반 상업은행은 국영은행에 등록하여 경화(hard currency) 취급에 관한 허가를 득하여야 함.
- 1백만 달러 이상의 외환거래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

□ 2008년 6월 1일 부터 공식환율과 시장에서 통용되는 비공식환율의 2가지 환율을 통합하여 달러당 14,250 Manat로 환율단일화 조치 단행

- 1998년 이래 공식환율은 달러당 5,200 Manat를 유지해 왔으나, 최근 3년간 비공식환율은 달러당 약 24,000 Manat 수준에 달하였음.

- 2009년 1월 1일 부터는 기존 5,000 Manat를 1 Manat로 전환하는 리디노미네이션(redenomination) 단행

6. 노동제도

□ 노동관련 법률

- 노동법(Labor Code), 휴가법(Law on Leaves of Absence), 직업안전법(Law on Occupational Safety), 연금법(Law on Pensions) 및 기타 대통령 포고령 등이 있음.
- 투르크메니스탄은 1993년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하였음.

□ 노동시장

- 투르크메니스탄의 실업률은 2007년 기준으로 약 60%에 달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높은 실업률은 예산감축으로 인한 공공부문의 고용 감소에 기인함.
- 니야조프 전 대통령 시대의 의무교육기간 감축, 외국어 및 컴퓨터 교육의 부족, 첨단 기술 이해 부족 등으로 인해 양질의 노동력이 부족한 실정임.
- 1997년부터 지방정부 산하 자영단체인 직업소개소(Labor Exchanges, Employment Office)가 운영되고 있으며, 모든 구인광고는 직업소개소에 공고하여야 함.
- 직업소개소에 등록되는 직업은 주로 단순노무직으로 직업소개소를 통해 외국인투자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고용하기는 쉽지 않음. 외국인투자기업들은 직업소개소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채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 경우에도 직업소개소에 대해 명목상의 수수료는 지급해야 함.
- 외국인투자기업은 의무적으로 직원의 70%를 현지인으로 고용하여야 함. 다만, 외국 건설회사가 턴키(turn-key)방식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됨.

□ 근로시간

- 법정근로시간 : 1일 8시간, 주 5일, 40시간
 - 실제로는 많은 노동자들이 주 6일, 1일 12시간 가까이 근무
 - 18세 이하 노동자의 노동시간은 1일 6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 부모와 노동조합의 동의가 있는 경우 예외 인정

- 취업가능 최저연령 : 만 16세. 단, 일부 중공업 분야의 경우 만 18세
- 직장내 보건 및 안전 : 관련 규정은 있으나 실제로는 준수되지 않음

□ 노동조합

- 정부가 허용하는 유일한 노동단체로서 투르크메니스탄 노동조합연맹(The Association of Trade Unions of Turkmenistan)이 있으며, 동 연맹은 지역별, 산업별로 조직되어 있음.
- 그러나, 노동조합연맹의 모든 사회활동이나 경제활동은 제한을 받고 있음.

□ 노동허가 및 비자 발급

- 현지과건 외국인근로자는 반드시 정부로부터 노동허가(work permit)를 득하여야 하며, 노동허가 및 비자 발급은 투르크메니스탄 기업이나 현지 외국인투자기업이 알선하고 있음.
- 비자 및 노동허가증 취득에는 관료주의로 인해 상당한 시간과 노력 및 서류제출이 필요한 실정임.
- 정부의 노동허가를 득하여 현지에서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내국인과 동등한 노동관련 법규가 적용됨

□ 사회보장제도

- 1991년부터 사회보장제도가 시행되어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을 지급해 오고 있으며, 1998년부터는 질병급여, 출산급여 및 산업재해보험 제도가 도입되었음.
- 노령연금은 남자의 경우 25년 이상 근무자에 대해 62세 부터, 여자의 경우 20년 이상 근무자에 대해 57세 부터 지급됨.
- 실업급여는 1년까지 지급되며, 출산휴가는 112일이고 휴가기간중 급여는 전액 지급됨.
- 사회보장세의 30%는 고용주가 부담

7. 기 타

- 등록된 모든 기업은 투르크메니스탄 회계기준에 의해 작성된 회계장부를 보관하여야 함.
 - 보고용 회계장부는 현지통화로 작성되어야 하며, 외국환거래에 대해서는 거래일의 중앙은행 고시 공식환율을 적용하여 환산

- 모든 토지는 국가 소유로서 국내기업이나 외국기업 모두 토지에 대한 장기사용권 (long-term land-use right ; lease) 취득을 통해 토지를 이용
 -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대통령만이 토지의 장기사용권(lease)을 부여할 권한을 보유 함.
 - 그러나, 외국인도 토지 이외의 부동산은 보유 가능

VII. 우리기업의 투자현황 및 진출방안

1. 우리나라의 투자현황

□ 투르크메니스탄에 대한 우리나라의 직접투자는 1992년 수교 이래 2008년 까지 총 3건, 18천 달러(누계, 신고기준)에 불과하여 거의 전무한 상태

- 우리나라와의 교역 규모도 2008년 총 22.5백만 달러(수출 22.3백만 달러, 수입 0.2백만)로 크지 않으며, 그동안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 지상사를 개설하지 않고 두바이 등 제3국 달러를 활용하여 현지와 교역하여 왔음.

□ 정부차원의 경제협력방안 논의 활발

- 2007년 이후 우리정부의 투자조사단 및 자원협력사절단 파견, 정부 고위관료들의 상호 방문 등 양국간 경제협력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음.
- 특히, 2008년 11월 베르디무하메도프(Berdymukhamedov)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정부간 공동협력위 설립 협정'이 체결됨으로써 앞으로 정부 차원의 경제협력방안 협의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 최근 대기업을 중심으로 우리기업의 투르크메니스탄 진출 본격화

- 국제 원자재가의 급등으로 투르크메니스탄 경제가 고성장을 구가하고 2007년 출범한 투르크메니스탄 신정부가 개방·개혁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우리기업들도 현지 진출을 본격적으로 모색하고 있음.
- LG상사, 대우인터내셔널, 현대종합상사 및 SK E&C가 이미 현지에 지사를 설립하였으며, 석유공사, 삼성물산, 코로롱, 롯데, 동양종합건설, 네오인포시스템 등도 지사 설립을 추진중이거나 지사 조직 없는 상태에서 현지 발주 프로젝트에의 참여를 모색중에 있음.
- 우리기업의 투르크메니스탄 진출은 자원개발, 석유화학 플랜트, 도로·항만 등 인프라 건설 등 주로 대규모 프로젝트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업 체 명	주요 진출부문
석유공사	자원개발
LG상사	플랜트 수주 추진중, 엘리베이터 수출
대우인터내셔널	합작공장 설립 추진, 건설중장비, 기계류 등 수출
SK E&C	플랜트 및 건설 프로젝트 수주 추진
삼성물산	플랜트 수주 추진
현대종합상사	인프라 프로젝트 수주 추진, 버스, 건설중장비, 기계류 수출
롯데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수주 추진
네오인포시스템	운전면허시험시스템 사업
동양종합건설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추진
코오롱	에너지, 건설 부문

2. 우리기업의 진출방안

□ 정부 차원의 경제협력이 선행될 필요

- 투르크메니스탄은 석유·가스 등 주요 산업이 국가 주도하에 개발 및 관리되고 있으며, 투자 허가 및 인센티브 제공 등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중요 사항은 전적으로 대통령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음.
- 따라서 우리기업의 현지발주 프로젝트 수주 지원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경제협력 분위기 조성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ODA(공적개발원조) 지원을 통해 양국간 경제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임.

□ 자원개발 프로젝트 적극 참여 필요

- 투르크메니스탄은 풍부한 에너지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국가 주도의 폐쇄적인 경제정책을 유지해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및 아제르바이잔 등 타 중앙아시아에 비해 자원개발 속도가 느린 편임.
-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 집권 이후 에너지산업을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활용코자 '석유·가스부문 개발전략 2020'을 수립하고 자본 및 기술력이 우수한 외국기업의 투자 유치에 노력하고 있음.
- 현재까지 카스피해 지역의 자원개발이 지체되어 있고, 최근에도 Amu Darya 분지에서 대규모 천연가스 매장이 확인되는 등 추가 자원개발의 여지도 높아 석유·가스 개발 사업에 대한 우리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하류부문(down stream)에 관심을 가질 필요

- 투르크메니스탄의 정유 및 석유화학 설비는 주로 소비에트 시대 건설되어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어 2007년 이후 정부 주도하에 석유화학단지 조성, 시설현대화 등의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음.
- 투르크메니스탄은 풍부한 천연가스를 바탕으로 국내소비량 이상의 전력을 생산함으로써 인근 국가에 전력을 수출하고 있으나, 설비 노후화와 투자 부족으로 그동안 생산능력이 정체되어 왔음. 최근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전력 생산능력 증대와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신규 발전소 건설, 시설 현대화 및 송전망 개보수 사업을 추진중에 있음.

□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건설 및 섬유 산업 투자에 관심

-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에너지 수출 수입을 재원으로 항만, 도로 건설, 수자원 개발 등 인프라 투자와 재건축 등 대규모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인프라 건설 부문도 유망한 분야임.
- 섬유산업은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전통적으로 발달된 산업으로 최근 정부가 국가발전동력으로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는 산업임.